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4-41호
2024. 7. 5.(금)

차 례

고 시(2)

-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고시 제2024-80호) 1
-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고시 제2024-81호) 4

공 고(9)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4-703호) 5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4-706호) 7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713호) 9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715호) 12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716호) 15
- 공시송달공고(공고 제2024-719호) 18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20호) 19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체납고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21호) 20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724호) 22

공 략									
-----	--	--	--	--	--	--	--	--	--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78-12번지에 위치한 미래어린이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영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영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공원녹지과 042-608-51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378-12번지 / 미래어린이공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미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미래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다. 사업의 규모

- 사업면적 : 1,570.8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4. 7. ~ 2024. 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관계인		
	구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대덕구	중리동	378-12	공	1,570.8	1,570.8	대전 대덕구	-	-	-	-
합 계							-	-	-	-	-

사. 실시계획 조서

시설 구분	시설 번호	시설명	공원조성계획 시설별 결정면적 (㎡)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	시설물 (개소)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공원조성계획 결정면적	실시계획 인가 신청면적	
총계	-	-	1,570.8	176.0	24	27.0	27.0	27.0	27.0	
시설 면적	계	-	860.1	176.0	24	27.0	27.0	27.0	27.0	
도로 및 광장		소 계	640.3	141.3	-	-	-	-	-	
		도로	141.6	-	-	-	-	-	-	
	1-1	광 장	498.7	141.3	-	-	-	-	-	
휴양 시설		소 계	-	-	6	-	-	-	-	
		2-가	정 자	-	-	1	-	-	-	
		2-나	등 의 자	-	-	4	-	-	-	
		2-다	파 고 라	-	-	1	-	-	-	신설
유희 시설		소 계	185.1	-	1	-	-	-	-	
		3-1	어 린 이 놀 이 터	185.1	-	-	-	-	-	
		3-가	조 합 놀 이 대	-	-	1	-	-	-	
운동 시설		소 계	-	-	5	-	-	-	-	
		4-가	체 력 단 련 시 설	-	-	5	-	-	-	
편의 시설		소 계	34.7	34.7	1	27.0	27.0	27.0	27.0	
		5-1	화 장 실	34.7	34.7	1	27.0	27.0	27.0	신설
관리 시설		소 계	-	-	11	-	-	-	-	
		6-가	공 원 등	-	-	5	-	-	-	
		6-나	C C T V	-	-	2	-	-	-	
		6-다	공 원 안 내 판	-	-	2	-	-	-	
		6-라	표 석	-	-	1	-	-	-	
		6-마	자 전 거 거 치 대	-	-	1	-	-	-	
녹지		소 계	-	-	-	-	-	-	-	
		- 녹 지	710.7	-	-	-	-	-	-	

아. 관계도서 : 게재생략(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끝.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부여 고시일
중리동 384-19	중리로43번길 6-13 (중리동)	건물신축	중리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4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24. 7. 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책과(☎042-608-5306)로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누리집) (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179, 179-1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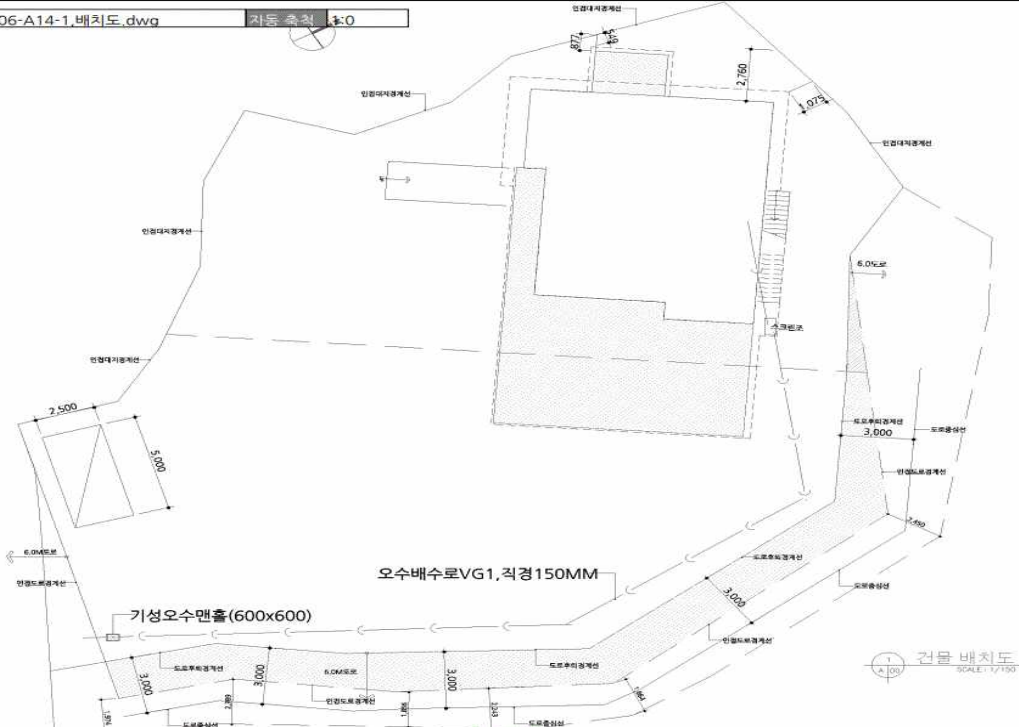
1. 제 목 :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0.(15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지적 (㎡)	편입 면적 (㎡)	지목	소유자		이 관 계 인 부 동 의 여 부
				주 소	성 명	
대전시 대덕구 장동 179번지	403	2.56	대	주소생략	김**	동의
대전시 대덕구 장동 179-1번지	546	76.92	대	주소생략	김**	
계	949	79.48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42-608-5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황 도

파일 이름 A14-006-06-A14-1.배치도.dwg 지중 축척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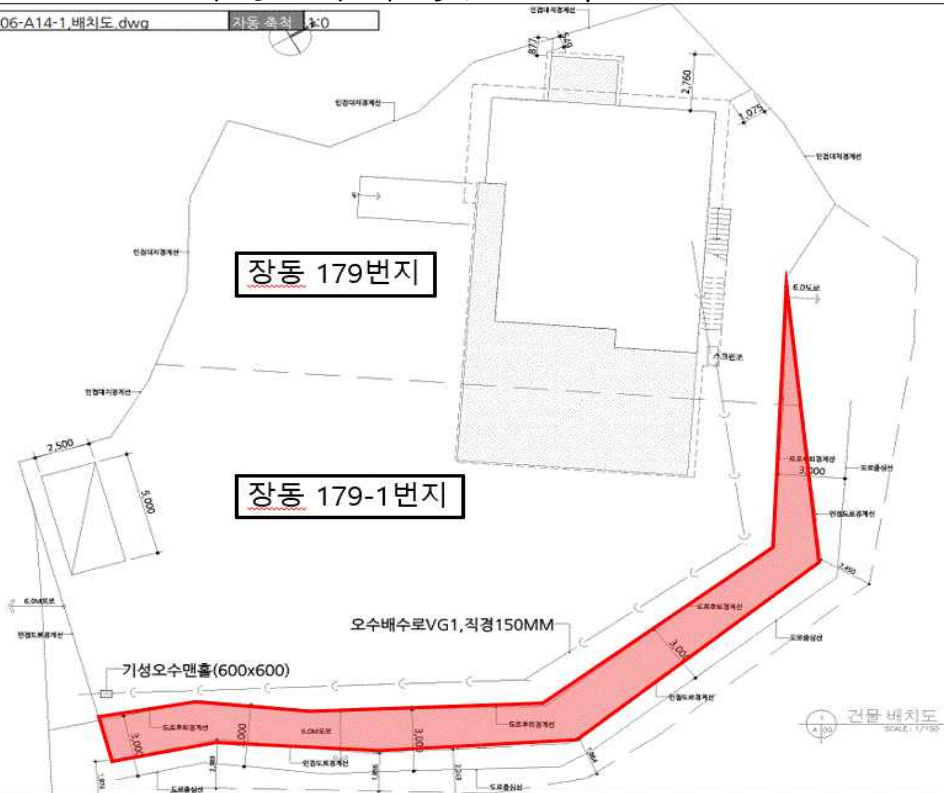


(1) 건물 배치도
SCALE: 1/7150

축 척 < 임 의 >

도로지정 위치 및 면적산출표

파일 이름 A14-006-06-A14-1.배치도.dwg 지중 축척 1:50



(1) 건물 배치도
SCALE: 1/7150

축 척 < 임 의 >

끝.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읍내동 434-3, 432-5, 436-9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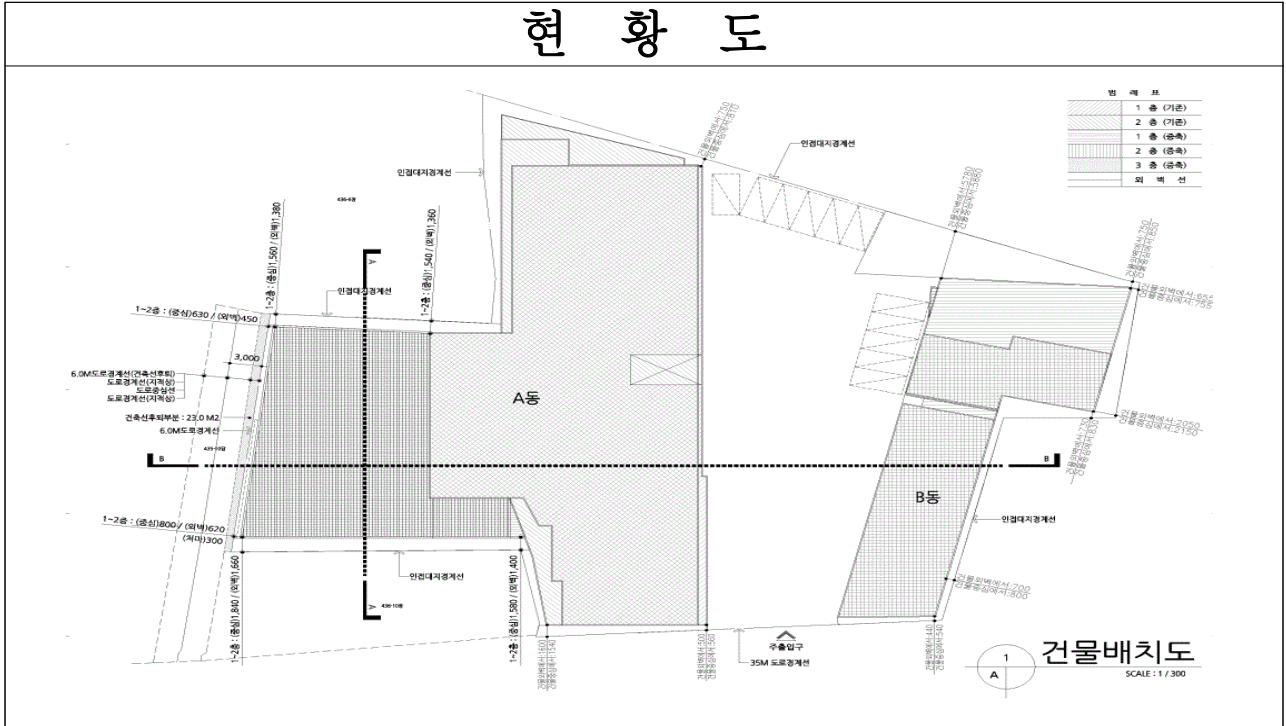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건축법」 상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
3.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20.(15일간)
4. 공고대상

소재지	지적 (㎡)	편입 면적 (㎡)	지목	소유자		이해 관계 동의여부
				주소	성명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436-9 번지	711	23	대	주소생략	**전	동의
	계	23				

5.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대덕구청 건축과로 의견(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건축과 건축허가팀(☎04260851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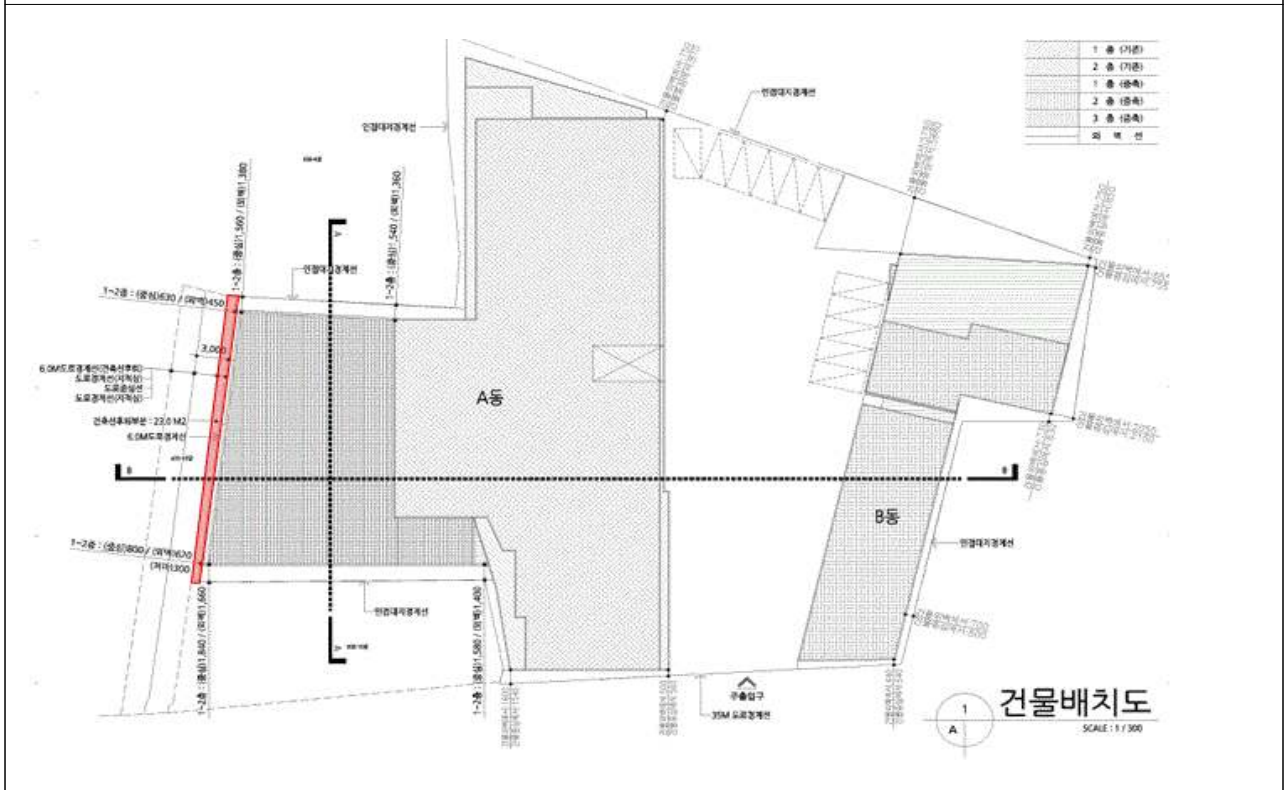
현 황 도



축척

< 임의 >

도로지정 위치 및 면적산출표



축척

< 임의 >

끝.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 2024. 7. 5. ~ 7. 31. (26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사전통지서의 경우, 2024. 7. 31.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과태료 부과금액이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6.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 불가 사유
김*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25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박*빈	대전광역시 중구 모암로17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최*열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364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원*덕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09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7. 5. ~ 7. 31. (26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부과통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 사유
김*식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손*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북로36번길 **, *층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이*용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32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이*영	대전광역시 동구 비래서로42번안길 **, *동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불법투기)	50,000	폐문부재

끝.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7. 5. ~ 7. 31. (26일간)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송달불가사유
박*미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청마1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담배꽂초 투기)	50,000	폐문부재
정*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106번길 ***,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차량이용 투기)	500,000	폐문부재

끝.

공시송달공고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되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2024. 6. 28.자로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회덕동(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3. 공고내용 : 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
4. 공고기간 : 2024. 7. 5. ~ 2024. 7. 19.(14일)
5.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지분	토지소유자		권리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상서동	산17-11	임	토지	432	㎡	1/3	송○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326-○○				

6.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 042-608-5942). 끝.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말소)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된 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9.(15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 반 음식점	영광식당	김○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03번길 161-27, 6호(오정동)	사업자등록 폐업 (말소) 2016. 12. 3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청문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체납고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체납고지)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9.
2.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47조(과태료)
3.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관
4. 행정처분 공고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부과(체납고지)통지
 - 나. 대상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40번길 83, 302호 (중리동) / 희망(최*석)
 - 다. 처분 사유 : 2021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라. 처분 내용 : 과태료 213,200원
5. 의견제출
 - 가. 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나. 과태료납부기한 : 2024. 7. 22. (월)
6. 유의사항
 -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증가산되어 부과됨을 알

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 사항은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5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7. 5. ~ 2024. 7. 19.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3.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판
4. 행정처분 공고 내용
 - 가.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부과(체납고지)통지
 - 나. 대상업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21번길 30, 2층 (덕암동) /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세빛 (양*수)
 - 다. 처분 사유 : 2023년 유통전문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라. 처분 내용 : 과태료 20만원(사전납부기간 내 납부 시)
5. 의견제출
 - 가. 제출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나. 과태료납부기한: 2024. 7. 22.(월)
6. 유의사항
 - 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증가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상기 공고와 관련 사항은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 - 696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